

울산신용보증재단 기간제 근로자(육아휴직 대체) 채용 공고

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(육아휴직 대체)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. 2025년도 기간제근로자(육아휴직 대체)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중심 채용 및 공정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.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년 1월 2일

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

울산신용보증재단 기간제 근로자(육아휴직 대체) 채용

1. 공모직위

- 기간제 근로자 1명

2. 계약기간

- 약 12개월(2025. 02. 01. ~ 2026. 1. 31.)

3. 채용분야

- 신용보증 등 업무보조
- ※ [별첨] 직무기술서 참조

4. 근무지

- 본·지점 (울산광역시 내)

5. 자격요건

- 가. 연령·성별·신체조건 제한 없음
- 나. 병역필 또는 면제자 : 현역은 임용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
- 다. 재단 「인사규정」 제14조 제1항(채용제한)에 전부 해당하지 아니한 자
- ※ [별지1] 결격사유 참고

6. 우대사항
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가점 부여
- ※ [별지2] 채용시험의 가점 부여기준 참고

7. 근로조건

급 여	복리후생	근무시간
매월 2,470,000원 (중식대 및 교통비 포함)	4대 보험, 복지포인트 등 내규에 의거 지급	주 5일 근무 (평일 8시간 : 9시 ~ 18시)

8. 채용절차 및 평가방법

전 형	실시일자	평가기준	선발배수	합격자 발표일자				
서류전형 (온라인)	'25. 1. 3(금) ~ 1. 16(목) (14시까지)	결격사유 여부 판단	-	'25. 1. 17(금) 17시 이후				
면접전형 (오프라인)	'25. 1. 21(화) 14시 예정	아래의 항목을 면접위원이 평가 후 산술평균한 점수 (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) 산정		1명 (선발 배수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선정)	'25. 1. 23(목) 17시 이후			
		구 분 배 점						
		기본자질 및 핵심가치	20점					
		전문분야지식 및 논리성	20점					
		직무수행능력	20점					
		적극적태도	20점					
		상대방 의견 경청	10점					
		고객중심사고	10점					
		신원조회 이상 여부 및 최종합격자 발표				1명 (선발 배수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선정)	'25. 1. 27(월) 17시 이후	

9. 전형별 채용일정

구 분	세 부 일 정
공고기간	2025. 1. 2(목) ~ 2025. 1. 16(목)
접수일자	2025. 1. 3(금) ~ 2025. 1. 16(목), 14:00까지
서류전형	2025. 1. 17(금) 한
서류전형 발표	2025. 1. 17(금), 17시
면접일자	2025. 1. 21(화), 14시
신원조회 확인	2025. 1. 27(월) 한
합격자 발표	2025. 1. 27(월), 17시
출근일자	2025. 2. 3(월)

※ 세부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10. 접수방법

- 재단 채용 홈페이지(recruit.incruit.com/ulsanshinbo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11. 제출서류

- 가.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마감일 기준(마감일 : 2025. 1. 17)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에 한함
나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시행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로 발급하여 사본 제출

제출서류 목록	유효기간	비고
1.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	-	공통
2. 경력증명서(경력사항 확인용)		
3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	3개월 이내	
4.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(자격요건 확인용)	-	
5. 기타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		
6. 가족관계증명서(결격사유 확인용)	3개월 이내	
7. 국가건강검진 결과서(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)	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	최종합격자 제출

12.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

- 가.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 시행
나. 최종합격자 발표 시 최종합격 예비합격자 규모는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하여 순번을 부여하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하면 차순위자로 입사 기회 부여

13. 동점자 처리

-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시험 평가항목 “기본자질 및 핵심가치”, “전문분야지식 및 논리성”, “직무수행능력”, “적극적태도”, “상대방 의견 경청”, “고객중심사고” 순으로 고득점자로 결정

14. 주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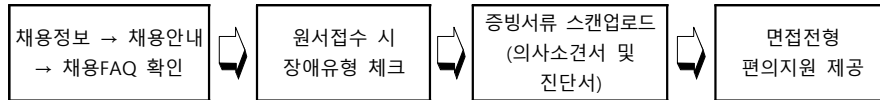
- 가.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사항, 자격사항, 경력사항 등 최종 합격 시 증빙
나. 허위사실 기재 및 채용비리 사실 확인 즉시 ‘탈락’ 처리 후, 민·형사상 조치 예정
다. 「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가족관계, 학력 등 작성 금지

15. 지원자 권리 보호제도 안내

가.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

■ 제공범위 : 면접전형

■ 신청절차



나. 이의 제기 절차

■ 근거 :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」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불합격자의 이의제기

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

■ 청구방법 : 재단 홈페이지 '클린신고센터' 로그인 후 작성 후 제출

■ 처리절차



■ 피해자 구제방법

피해자 특정 가능	피해자 특정 가능 시	최종 면접단계 피해
	필기 단계 피해	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
	서류 단계 피해	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
피해자 특정 불가	피해자 특정 불가 시	최종 면접단계 피해
	필기 단계 피해	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
	서류 단계 피해	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
	단계 구분이 어려운 경우	

16. 기타사항

가. 응시자의 부적합 사유 또는 부정 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당 재단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.

나. 제출서류 중 서류전형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미준수자는 보완 요청없이 탈락될 수 있음

다. 제출서류가 허위내용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분 및 추후 입사 불가

라.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,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
마. 전형별 결과는 기재한 휴대 전화번호로 개별 통지(문자발송 등) 예정

바. 기타사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(담당자 추화량 차장, 052-283-831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7.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

가. 당 재단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최종합격자 제외)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함.

나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재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

다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[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당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.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 재단이 부담

라. 당 재단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간 채용서류 보관하며,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.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(탈락자 포함)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해당 채용 연도의 마지막일로부터 5년간 보존예정

울 산 신 용 보 증 재 단

별지1 결격사유

구 분	세 부 내 용
재단 「인사규정」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	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 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6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. 병역을 기피한 자 8.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된 자 9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의 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별지2 채용시험의 가점 부여 기준

구 분	만점의 10퍼센트	만점의 5퍼센트
독립유공자	가.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.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	가. 애국지사의 가족 나.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
국가유공자	가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나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진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	가. 좌측 '가'호 대상자의 배우자 나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사이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보훈보상대상자	가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나.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	가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
5·18민주유공자	가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나.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	가. 좌측 '가'호 대상자의 배우자 나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특수임무유공자	가.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나.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	가. 좌측 '가'호 대상자의 배우자 나.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고엽제후유의증	가.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 의증환자	가. 좌측 '가'호 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나. 수당지급 대상자 중 장해등급 중등도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